

물질안전보건자료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KF-96-10,000CS

나. 제품의 권고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오일, 변성오일, 수지개질제, 소포제, 광택제, 이형제, 윤활유, 작동유

사용상의 제한 산업용으로만 사용

다. 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 정보

회사명 신에츠화학공업주식회사
주소 일본 군마현 안나가시 이소베2가 13-1(우379-0195)
담당부서 군마 사업소 품질 보증부
전화번호 +81(0)27-385-2172
FAX번호 +81(0)27-385-2753
공급자
회사명 한국신에츠실리콘(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7-23 GT타워 15층
담당부서 업무부
전화번호 +82(0)2-590-2500
FAX번호 +82(0)2-590-2501
응급상황 +82(0)2-590-2500
이메일 msds@shinetsu.net

2. 유해 위험성

가. 유해 위험성 분류

물리적위험성 분류되지 않음.
건강유해성 분류되지 않음.
환경유해성 분류되지 않음.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그림문자 없음.
신호어 없음.
유해 위험 문구 없음.
예방조치문구 없음.

다. 유해 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 위험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Table with 5 columns: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CAS 번호, 식별번호, 함유량. Row 1: Dimethylpolysiloxane, 63148-62-9, KE-31068, 100

4. 응급조치요령

- 눈에 들어갔을 때 즉시 최소 15분동안 충분히 씻어내십시오. 자극이 발생하거나 지속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피부에 접촉했을 때 비누와 물로 접촉 부위를 세척할 것.
흡입했을 때 이 물질은 의도된 정상적인 사용 상황에서 흡입 위험물로 예상되지 않음.
먹었을 때 입을 씻어내시오.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증상에 따라 처치함.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적절한 소화제

물 안개, 포말, 분말소화약제, 이산화탄소(CO2).

부적절한 소화제

불길이 번질 위험이 있으므로 강력한 물줄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예: 연소시 발생 유해물질)

열을 받거나 화재 발생시, 유해 가스를 형성할 수 있음.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자료없음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적합한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안전하다면, 더 이상의 누출이나 유출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수도, 수로 또는 지하로 방출하지 말 것.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인화원을 제거할 것.

대량 누출: 위험없이 할 수 있는 경우 누출물을 막을 것. 가능한 경우 누출된 물질 주위로 도랑을 팔 것. 퍼지지 않게 플라스틱 커버로 덮으십시오. 질석 모래 혹은 흙 등 불연성 재료를 이용하여 제품을 흡수시킨 후 후속처리를 위하여 용기에 담을 것.

소량 누출: 흡착제 (천, 플리스)로 닦아내십시오. 잔여 오염이 완전히 제거되게 하기 위해 표면을 세척하십시오.

절대로 얼릴러 진 것을 다시 사용하려고 본래 용기에 넣지 말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미스트를 흡입하지 마시오.

나. 안전한 저장 방법 (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직사광선을 피한 차고 건조한 곳에 저장함. 원래 용기에 담아서 보관할 것.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구성 성분에 대한 노출 기준이 명시되지 않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세안장치 시설을 제공할 것.

다. 개인 보호구

o 호흡기보호

대개 개인 호흡 보호 장비는 필요하지 않음.

o 눈보호

옆쪽이 밀폐된 보호용 안경을 착용하십시오.

o 손보호

보호장갑을 착용하십시오.

o 신체보호

특별 보호 장구가 필요하지 않음.

위생대책

휴식 시간 전이나 본 제품을 취급한 다음에는 즉시 손을 씻으십시오. 이 제품은 공기중에서 약 150°C(300°F)이상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생성할수있음.포름알데히드는 피부와 호흡기에 민감하고, 눈과 식도 자극성이고, 급성독성과 잠재적 암 위험이있음. 그래서 공기중에서 약 150°C(300°F)이상으로 가열할 때는 적절한 환기장치를 사용하고 장갑,보안경,유기증기호흡기 또는 보호의를 착용하십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물리적상태

액체.

형태

액체.

색

무색, 투명한.

나. 냄새

무취

다. 냄새 역치

자료없음

라. pH

자료없음

마. 녹는 점/어는 점

녹는점

적용되지 않음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 점 범위

적용되지 않음

사. 인화점

> 300 °C (> 572 °F) 개방식
> 94 °C (> 201.2 °F) 밀폐식 시험 방법

아. 증발속도

사소한 (부틸 아세테이트=1)

자.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 자료없음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하한 자료없음

카. 증기압 무시할수있음(25℃)

타. 용해도(물) 불용성 (<1 ppm)

파. 증기밀도 적용되지 않음

하. 비중 0.975 (25 °C)

거. n-옥탄올/물 분배계수 자료없음

너. 자연발화온도 400 °C (752 °F)

더. 분해온도 자료없음

러. 점도 10000 mm²/s (25 °C)

머. 분자량 자료없음

다른 정보

동점도 1000 mm²/s

휘발도 < 0.3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화학적 안정성 정상 상태에서는 안정함.
 유해 반응의 가능성 위험한 중합반응이 발생하지 않음.

나. 피해야할 조건 (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자료없음

다. 피해야 할 물질 강산화제.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가열 또는 연소에 의해 분해생성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산화탄소와 불완전 연소에 따라 미량의 탄소화합물을 생성함: 이산화규소 포름알데히드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호흡기 자료없음
- 경구 자료없음
- 눈 자료없음
- 피부 자료없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 급성 독성 (노출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 기재)

제품	시험 결과
Dimethylpolysiloxane (63148-62-9)	급성 경구 LD50 쥐: > 5 g/kg (유사 디메틸폴리실록산으로 추정)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피부-토끼 : 피부자극없음.(유사 디메틸폴리실록산으로 평가)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눈-토끼 : 눈 자극없음.(유사 디메틸폴리실록산으로 평가)
- 호흡기 과민성 자료없음
- 피부 과민성 자료없음
- 발암성 발암성없음(유사 디메틸폴리실록산으로 평가)
- 생식세포 변이원성 음성(박테리아)(유사 디메틸폴리실록산으로 평가)
- 생식 독성 자료없음
- 표적장기 전신독성 물질(1회 노출) 자료없음
- 표적장기 전신독성 독성(반복 노출) 자료없음
- 흡인 유해성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자료없음.

수생환경 유해성, 급성 유해성 자료없음

수생환경 유해성, 만성 유해성 자료없음

나. 잔류성 및 분해성 건조한 토양에서 분해를 일으킬 수 있음.(유사 디메틸폴리실록산으로 평가)

16. 기타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ACGIH

EPA: 데이터베이스 확보

NLM: 유해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 US. IARC 화학물질인자의 노출기준 모노그래프 대한민국. 사고대비물질 (대통령령 제19203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위험물지정수량 (대통령령 제18406호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1)

대한민국. 제조등의 금지유해물질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대한민국. 제조 또는 사용 허가대상 유해물질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 대한민국. 유독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1997-10 개정) 대한민국. 관찰 대상 화학물질 (TCCL 장관 명령 제 6조)

대한민국.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노동부고시 제1986-45 개정) 대한민국.

취급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1조) 대한민국. 휘발성유기화합물 (환경부고시 제2001-36, 2001년 3월8일 개정) 대한민국. 취급제한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1조) 대한민국.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TCCL), 기존화학물질목록 (KECI)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기존화학물질목록 1997년이전목록

대한민국. 유독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0조) 대한민국.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4조)

나. 최초작성일자

2011년 12월 28일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2011년 12월 28일 (01 개정)

라. 기타

자료없음

책임의 한계

본 제품은 분무상태로 사용하여 그 입자를 흡입한 경우 흡입독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도의 예방조치가 필요함. 배기장치의 설치, 호흡용 보호구의 착용등 충분한 대책을 취하시요. 상세사항에 대해서는 폐사영업담당에 상담바랍니다.

기재내용은 대표치이고, 규격 및 보증치를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추천된 산업안전보건조치나 취급방법은 통상의 취급사항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용도, 취급조건은 추천하는 사항이 적절한지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일반공업용도로 개발, 제조 된 제품입니다. 의료용 기타 특수용도에 사용하시고자 할 때는 귀사에서 사전TEST하여, 해당용도에 사용하는 것의 안전성을 확인하여 사용 하십시오. 의료용IMPLANT용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자료집은 다음 절의 이전 버전에서 변경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물리 및 화학적 특성: 다중 특성